부패 없애 GO 청렴 올리 GO
고용노동부
청렴신바람
제3호
2018.12.20(목)

2018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 권익위, 「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우리 부는 **종합청렴도 '2등급' 기관으로 도약**

※ **'17년도 4등급**(7.28점) → '18년 2등급(8.23점)

[우리 부 청렴도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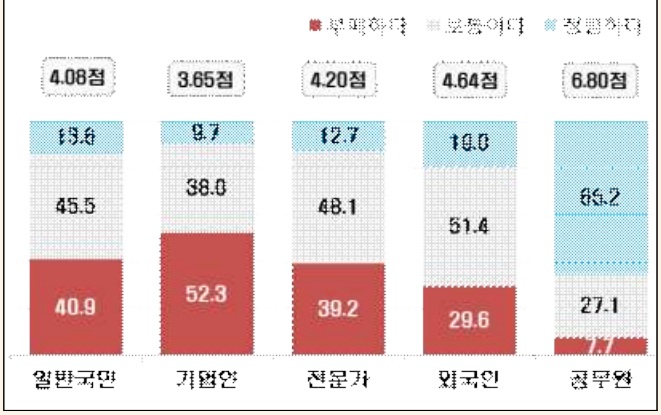
		'17년 대비
종합청렴도	8.23점	0.95점 ↑
외부청렴도	8.46점	1.11점 ↑
내부청렴도	8.38점	0.63점 ↑
정책고객평가	7.14점	0.28점 ↑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권익위, 「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기업인·일반국민의 인식과 공무원의 인식에 큰 폭의 차이를 보임**

※ 설문대상: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 등 총 4,530명

[공직사회 부패수준 인식]



복무·인사 관련 제·개정 법령 정보

1 '18.11.27.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시행

신고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사권자에게 신고 가능**
조사	**인사권자는 신고 즉시 사실 조사**를 하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피해자 신고자 보호	피해자·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파견근무,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가해자 제재	가해자에 대해 ①직위해제 ②징계의결 요구 및 **③징계의결 요구전 승진심사 대상 제외** **④전보** ⑤최하위 성과등급 부여 **⑥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등 주요보직 제한** 조치 가능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필수보직기간 준수'에도 불구하고** 전보 가능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일명 '윤창호법*'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

특가법 ('18.12.18 시행)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

구분	현행	개정
상해	10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벌금	**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사망	1년이상 유기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18.12.11 국무회의 의결

도로교통법 ('19.6.25 시행)

〈주요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정
혈중알콜농도	면허정지 0.05% 면허취소 0.1%	**면허정지 0.03%** **면허취소 0.08%**
	소주 1잔이면 면허정지, 4잔이면 취소 ↲	
면허취소	3회 이상 면허정지 사유 해당하는 경우	**2회 이상 면허정지 사유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 결격사유	(신설) 음주운전 교통사고 3회 이상 3년 등	**음주치사 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등**
벌칙	3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 1년~3년, 벌금 5백만원~1천만원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등**

※ '18.12.18 국무회의 의결, 12.24 공포 예정

「청탁금지법」 Q & A

Q **공무원이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고충을 상담하며 자신의 전보를 부탁하거나,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A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자신의 전보나 승진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가능**하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Q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는지?**

A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음

「공무원 행동강령」 Q & A

Q **「고용노동부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1항에서 말하는 "소속기관의 퇴직자"의 적용 범위는?**

A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에서 말하는 **'소속기관'의 범위**는 **동일한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모든 소속기관**을 의미하므로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이 해당됨.

따라서,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3조제1항) 고용노동부 본부, 소속기관(지방관서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고용노동부 본부, 소속기관 등 어느 한 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이 **고용노동부 공무원과 직무관련자로서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 향응 등 사적 접촉**을 한다면 제5조의6에 따른 **신고대상**임.

Q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가 되는지?**

A 「고용노동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것은

무고성 신고 등에 의한 선량한 공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익명의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또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역사속 청렴 이야기



청렴 명언

清而不刻(청이불각)
청렴하되 각박하지 않고

和而不蕩(화이불탕)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으며

嚴而不殘(엄이불잔)
엄격하되 잔인하지 않고

寬而不弛(관이불이)
너그럽되 느슨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의 청성잡기(靑城雜記) 중 「질언(質言)」에서>

인물소개

(성대중) 서얼이라는 신분적 한계 때문에 순조로운 벼슬길에 오르지 못할 처지였으나, 영조의 탕평책에 편승한 서얼들의 신분상승운동인 **'서얼통청운동(庶孼通淸運動)'**에 힘입어 1765년 청직(淸職)에 임명된 **서얼통청**의 **상징적 인물**

불환빈(不患貧) **환불균**(患不均)
백성은 가난함에 분노하기보다,
불공정함에 더 분노한다.

<송나라 유학자 '**육상산**'>

거절은 **짧은 긴장**을 낳지만,
불편한 승낙은 **긴 불행**을 만든다.

<출처: **수잔뉴먼**의 「거절의 미학」에서>

청렴마일리지 우수기관·우수직원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청렴마일리지 '우수기관'과 '우수직원'을 소개합니다.

매년 청렴마일리지 최우수(1), 우수(2) 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2018년도 청렴마일리지 우수기관

최우수	전주지청	포상금 100만원
우 수	청주지청	포상금 70만원
우 수	대전청	포상금 70만원

월별 청렴마일리지 우수 직원에 대해 포상금 각 10만원 지급

2018.11월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청주	지역협력과	주무관	서은혜
전주	고용관리과	고객지원관	허주경
충주	충주고용센터	직업상담원	홍서별
전주	근로개선지도1과	과 장	박애스더
서울북부	서울북부고용센터	주무관	채승훈



청주지청 '서은혜 주무관'은 청렴연수원이 주관하는 「2018년 청렴교육 강의·강연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18.12월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평택	지역협력과	주무관	안평국
청주	고용관리과	주무관	이재인
충주	제천고용센터	주무관	도선희
충주	제천고용센터	주무관	조선순
청주	지역협력과	주무관	서은혜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 받은 경우 ..... 접대비 산정은?

